



대 구 지 방 법 원

제 5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42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
무상횡령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영필(기소), 정한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우규(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정100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피고인이 자동차대출 계약에 따라 차량을 처분한 대가로 탁송업체로부터 교부받은 69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므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 연장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당초의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 '변제기일 경과 후 연체 시 차량 매매 또는 제3자 타인운행, 채권 양도함을 승인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차량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 229615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 피해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원리금에 충당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과 별개의 약정인 차량 양도계약을 통하여 690만 원을 교부받았더라도 위 금전은 이 사건 대부계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부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전 중 원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라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대부업법이 정한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



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차비로 공제한 15만 원과 위 690만 원 모두가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를 보면, 주차비 명목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원금으로 보았고, 위 690만 원 전체를 이자로 본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원리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교부받아(이자율 978.6%)]라는 기재와 증거기록 1권 5~10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주차비로 공제한 15만 원을 원금에 포함하여 원금을 300만 원으로 보더라도, 53일 만에 이자 350만 원을 수수한 것이어서 연 이자율이 895.2%이므로 여전히 대부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점은 변함이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제3자 이용으로 넘긴 상태라서 위 690만 원은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으면 돌려줘야 되는 보관금이므로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3자 이용으로 넘기면서 받은 690만 원을 모두 반환한다면 이 사건 차량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23. 4. 25. 피해자에게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300만 원을 변제기 2023. 5. 25., 이자율 월 1.66%로 정해 대



부하였고, 주차비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34쪽).

2)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대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35쪽).

1. 변제기일 경과 후 연체 시 차량 매매 또는 제3자·타인운행, 채권양도함을 승인·인정합니다.

1. 미변제시 先 제3자 타인 우선 이용·채권양도, 後 차량매매서류 제공요청 시 송부함에 동의 확인 합니다.

※ 특약(계약기간·변제일 만료 후, 별도 협의 없을시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1. 계약만료·미변제시 위 차량 매매 또는 제3자·타인(개인)에게 운행·채권양도 할 수 있으며 변제 시까지 양수인이 위 차량을 운행 사용함을 허락·인정하며, 운행 시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명의로 보험 가입하여 운행함과 사고 시 보험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3) 피해자는 2023. 5. 25. 피고인에게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자를 납부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자는 31일 날 입금해도 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21쪽).

4) 피고인은 2023. 6. 17. 차량 탁송업체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2권 106, 233쪽).

5) 피고인은 2023. 6. 29. 피해자에게 '2023. 4. 25. 이후 수개월 간 이자 등이 정



산되고 있지 않고, 대부기간 만료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어 전당대부거래계약 및 자동차대출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37쪽).

6) 피해자는 경찰에서 "한 달 후인 2023. 5. 25.에도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상환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해줘서 연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쪽).

7) 피해자는 2023. 10. 9.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에는 '별도 협의가 없을시 계약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제기 연장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의 변제기를 연장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최초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취지로 답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는바, 피해자의 변제기 연장 요청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답장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와 동일한 취지로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2023. 5. 31.까지 이자를 납부해도 되냐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다가, 2023. 6. 29.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최소한 위 내용 증명 발송 시까지 이 사건 대부계약의 변제기를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2023. 6. 17.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2의 나. 5)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운성 _____

 판사 박치봉 _____

 판사 강경호 _____